

등록번호	환경과-30393
등록일자	2015.9.14.
결재일자	2015.9.1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수질보전팀장	환경과장	복지환경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조명환	조용숙	代김종호	유용렬	황치영	09/15 代황치영
협 조	주무관	이수정			
	규제개혁추진팀장	홍정진			
	의회법제팀장	이창하			
	기획예산과장	권순우			

## 「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 개정계획



복지환경국  
환 경 과

# 「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 개정계획

하수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규제 정비 및 하수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으로 「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## I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
- 하수도법 제41조, 제80조
- 등록규제 폐지대상 조례 개정{기획예산과-11334(2015.9.7.)}

## II 개정 이유

- 하수도법 일부개정으로 법 조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 변경
- 하수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례 조항 삭제

## III 주요 개정내용

- 하수도법 일부개정에 의한 조례 조항 : **일부개정(조례 제4조제2항)**
  - 하수도법의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이 “제80조 제3항”에서 “제80조제4항”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
- 하수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 : **삭제(조례 제1조), 일부개정(조례 제12조)**
  - 조례 제11조(수수료의 가산금) : 하수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
  - 조례 제12조(수수료의 강제징수) : 가산금 관련 문구 삭제

## IV

## 추진 일정

- 2015. 9월 : 조례개정 방침
- 2015. 9월 : 성별영향분석평가, 부패영향평가, 규제사전심사 실시
- 2015. 9월 : 입법예고(20일간)
- 2015. 10월 : 조례·규칙심의회 상정
- 2015. 10월 : 구의회 상정
- 2015. 11월 : 조례 공포

붙임 : 「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  
개정안 1부. 끝.